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1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12. 6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가. 우리 군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·운반을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
- 나. 임금 및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여,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코자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함

※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(제7조제1항 중 별표1)

구분	수 수 료		비 고
	현재	인상	
기본요금 (0.75m ³ 까지)	13,530원	15,280원	市 처리시설 유입 처리 수수료 포함(10ℓ 당 10원)
초과요금 (매0.1m ³ 마다)	1,490원	1,680원	

3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제41조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2. 10. 5. ~ 10. 26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일자리경제과(물가대책위원회)와 합의되었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분뇨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행위를 완료한 경우 그 수수료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다.

【별표 1】

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준

[제7조제1항 관련]

구분	수수료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기본요금 (0.75m ³ 까지)	14,530원	750원	15,280원
초과요금 (매0.1m ³ 마다)	1,580원	100원	1,680원

- ※ 분뇨의 수집·운반 수수료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비용도 포함됨
- ※ 분뇨처리는 수집·운반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것을 말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	
【별표 1】		【별표 1】			
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(제7조제1항 관련)		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(제7조제1항 관련)			
구 분		수 수 료			
		수집·운반	처 리	계	
2019년 6월부터	기본요금 (0.75㎡까지)	12,700원	750원	13,450원	
	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	1,270원	100원	1,370원	
2020년 6월부터	기본요금 (0.75㎡까지)	12,780원	750원	13,530원	
	초과요금 (매0.1㎡마다)	1,390원	100원	1,490원	
※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 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		※ 분뇨의 수집·운반 수수료에는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비용도 포함됨			
※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		※ 분뇨처리는 수집·운반한 분뇨를 분뇨처리 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것을 말함			

□ 하수도법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

-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